

성인학습과정 산업체 근무경력 등의 학점인정에 관한 규정

□ 제정 : 2022. 3. 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수원과학대학교(이하“우리대학”이라 한다.) 「학칙 제31조의 11」에 의거하여 산업체에서 학습·연구·실습 또는 근무한 경험에 대하여 학점인정에 관한 대상·절차와 범위 등 학점인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 산업체 근무경력 등의 학점인정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는 우리대학의 성인학습과정에 입학할 허가받은 자 또는 재학생으로 한다.

제3조(학점인정 대상기관) 산업체 근무경력 등의 근무경험을 학점취득 및 교육 이수 결과에 대하여 학점인정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2. 방송법 제9조에 따라 등록된 방송관련 업체 및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등록된 신문사 등
3.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4.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감독청에 등록된 학원 및 교습소
5.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6.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상시 5인(사업주 포함)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산업체
7.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는 산업체
8. 기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관

제4조(학점인정 내용) ① 산업체 근무경력의 학점인정 대상은 우리대학의 성인학습과정에서 개설·운영하는 모집단위의 교육과정 또는 교과목 단위를 기준으로 하되, 교육과정과 학습·연구·실습 또는 근무 경험간의 관련성 유무에 대하여 학과의 학점인정소위원회에서 평가한 결과에 대한 학점인정심의위원회의 심의에 의하여 인정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학과의 교육과정 또는 교과목 단위를 기준으로 교육과정과 학습·연구·실습 또는 근무 경험과의 관련성 유무 판단의 기준은 ‘대학교육 편제단위조사의 진로·취업분야 기준’을 준용하여 판단한다.

제5조(산업체 근무경력 등의 이수 학점인정) 산업체 근무경력 등의 학점인정에 대하여 평가인정을 통한 학점인정 범위는 아래와 같으나,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10% 이내로 인정한다.

5-0-40 성인학습과정 산업체 근무경력 등의 학점인정에 관한 규정

- 산업체 근무 20년 이상 ~ : 9학점까지 인정
- 산업체 근무 10년 이상 ~ 20년 미만 : 6학점까지 인정
- 산업체 근무 5년 이상 ~ 10년 미만 : 3학점까지 인정

제6조(위원회 등) ① 다른 학교, 연구기관, 산업체에서 취득한 학점이나 교육 이수 결과에 대한 학점인정의 심의는 학점인정심의위원회에서 한다.

② 학점인정 신청사항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 및 심의를 위하여 학과별로 교원 및 산업체인사로 구성된 학점인정소위원회를 둔다.

③ 학점인정소위원회의 기능은 산업체 기준, 교육과정과 근무경험과의 관련성 유무, 인정학점의 수 등 주요사항을 심의 평가하여 학점인정심의위원회에 제출하므로써 평가인정의 적절성, 객관성 등에 대한 학점인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학점인정을 확정할 수 있게 한다.

제7조(학점인정 신청) ① 학점인정 신청자는 입학하기 전의 산업체 근무경력에 대하여 입학허가 시점부터 졸업이전 시점까지 매학기 산업체 근무경력 등에 관한 학점인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학사일정에 의한다.

② 매학기 산업체 근무경력 등의 학점인정 신청은 수강신청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산업체 근무경력 등의 학점인정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제한할 수 있다.

1. 신청서류를 조작하거나 허위 사실이 발각된 자
2. 과거 학점인정을 위한 평가에서 학점인정심의위원회가 학점인정을 불허한 자

④ 학점인정 신청자는 신청양식에 따른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소속 학과를 통하여 교학처에 접수한다. 단, 신청과정에서 학과 지도교수 또는 학과장의 안내와 상담을 거치도록 한다.

⑤ 학점인정 신청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산업체 근무경력 등의 학점인정 신청서 [별지 1]
2. 직무관련 기술서 [별지 2]
3. 이력서, 포트폴리오, 경력증명서 등 학점인정을 위한 평가 증빙자료
4. 학과가 학점인정을 위해서 직접 현장실무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신청자는 위 제3호의 증빙 자료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학점인정 평가의 실시) ① 학점인정을 위한 평가는 신청 학과별 학점인정소위원회에서 신청 교과목별로 실시하며, [별지 3]호의 양식에 의한다.

② 평가인정에 의한 성적평가는 P(Pass)/F(Fale) 여부만을 정한다.

③ 학점인정소위원회는 신청자가 제출한 자료의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 신청자와 면담을 할 수 있다.

④ 학점인정소위원회는 신청내용에 대한 평가결과를 신청자에게 [별지 4]호 양식을 이용하여 통보하여야 하고, 필요시 추가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신청자는 학점인정소위원회의 평가결과에 대해서 평가결과의 통보 후 10일 이내에 재평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청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학점인정 재평가 신청서 [별지 5]
2. 이력서, 포트폴리오, 경력증명서 등 학점인정을 위한 평가 증빙자료

⑥ 학점인정소위원회는 평가결과를 통지한 후 10일이 경과한 때까지 뒤 신청자의 재평가 요구가 없는 경우 평가인정 결과를 최종 확정한다.

⑦ 이의신청시 학점인정소위원회는 이의신청에 의한 재평가를 최초 평가 절차에 따라 실시한다.

제9조(학점인정 확정) ① 산업체 근무경력 등의 학점인정을 위하여 학과의 학점인정소위원회는 최종 학점인정 평가 심사 결과를 관련서류 일체를 첨부하여 학점인정심의위원회에 제출한다.

② 산업체 근무경력 등의 학점인정을 위하여 학점인정심의위원회는 학점인정소위원회의 평가 인정 결과에 대하여 [별지 6호 양식]에 따라 학과의 학점인정소위원회가 적정하게 평가 하였는지 [별표 1]의 학점인정평가 심사기준에 준하여 심의한다.

1. 학과의 교육과정과 산업체 근무경력이 본 규정에서 정하는 산업체 기준에 부합하는 기관인지의 여부
2. 학과의 교육과정과 학습·연구·실습 또는 근무 경험과의 관련성 유무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 '대학교육 편제단위조사의 진로·취업분야 기준'준용의 적합성 유무
3. 산업체 근무경력 등의 학점인정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
4. 개별 신청자의 평가인정 학점한도 초과여부
5. 기타 학점인정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심의 결과 오류가 발생한 경우 학점인정심의위원회는 학점인정소위원회에게 심의 결과를 통지하고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학점인정 결과 통보 등) 교학처는 학점인정위원회의 심의 결과서인 [별지 7호의 양식]에 의하여 총장에게 보고하고, 총장의 승인을 받은 후 [별지 8호 및 [별지 9호 양식으로 각 학과와 신청자에게 통보한다.

제11조(학점인정 결과 적용) ① 대학(교학처)은 산업체 근무경력 등의 학점인정 평가인정 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적용한다.

1. 평가 인정된 교과목의 학점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2. 평가 인정된 학점은 학점인정 범위내에서 졸업학점에 포함

② 대학은 학점인정에 대하여 취득학점을 인정하되, 평점 평균 산출에서는 제외할 수 있다.

③ 학생의 수업연한은 교육과정의 수업연한을 충족하여야 한다.

제12조(보칙) ① 산업체 근무경력 등의 학점인정 결과는 신청자의 학기별 등록금 고지 및 납부

5-0-40 성인학습과정 산업체 근무경력 등의 학점인정에 관한 규정

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㉔ 산업체 근무경력 등의 학점인정신청자가 산업체 근무경력 등의 학점인정 결과에 따라 「학칙 제24조」 ㉓항의 최소 수강신청학점을 미달할 경우 총장의 승인을 받아 수강 신청할 수 있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산업체 근무경력 등의 학점인정평가 심사기준

인정기관	근무경력	인정내역						비고
		이수 구분	교과목명	기준	최대인정학점		등급	
					정규	전공 심화		
산업체 근무 경험	3년 이상 ~ 10년 미만	전공	산업체 근무 경력의 직무내용과 맞는 교육과정 내의 교과목(학과 학점인정소위원회의 인정에 의함)	'대학교육 편제단위 조사의 진로·취업 분야 기준'	3	3	P	
	10년 이상~20년 미만 (전공심화는 10년 이상)	전공			6	6	P	
	20년 이상~	전공			9	-	P	

[유의사항]

- ① 산업체 근무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는 기관은 3조에 나열한 산업체 기준에 부합하는 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에 한하여 인정
- ② 학과의 교육과정 내 교과목과 근무 경험과의 관련성 유무 판단은 '대학교육 편제단위조사의 진로·취업분야 기준'을 준용하여 인정
- ③ 산업체 근무경력에 따라 신청할 수 있는 학점 범위 내에서 학점인정 신청이 가능
- ④ 학점인정 교과목의 평가 학점은 P(Pass)로 평가

[별지 2] 직무관련 기술서

직무관련 기술서					
<i>※ 학점인정 신청 교과목별로 기재함</i>					
신청인	성명	학과	학년	학번	
신청교과목명			이수구분	교양 (), 전공()	
주요경력 산업체 현황	산업체명				
	부서명	직 무			
	직 위	근무기간			
	주 소				
	연락처	(직장)			
산업체 근무경력	산업체명	부서명	담당직무	근무기간	비고
				~	
				~	
				~	
				~	
	계	산업체 근무기간의 합		년 개월	
직무관련 기술 (작성란이 부족할 경우 별지 작성 가능함)	<i>※ 산업체 근무기간 중 근무경험에 대하여 학점인정 신청 교과목과의 연관성, 직무숙달정도, 직무수행시 고려사항 등에 대하여 상세하게 기술함.</i>				
제출일		신청인	(서명)		
첨부서류	* 근무경력 확인서 1부. (근무경력 확인서는 산업체별로 제출해야 함)				

[별지 3] 산업체 근무경력 등의 학점인정 교과목 학과 평가서

산업체 근무경력 등의 학점인정 교과목 학과 평가서					
신청인	학과명		성명	학년	학번
	학점인정 신청현황	이수구분	교과목	근무기간(년/월)	신청 학점수
계					
산업체 근무경력	산업체명	부서명	담당직무	근무기간(년/월)	
				/	
				/	
				/	
	계			/	

◆ 교과목 평가인정 사항

학점인정 신청 교과목명 I	확인사항 (산업체 인정 기준확인 등)	
	학과 교육과정과 산업체 경력의 관련성 평가내용	
	인정가능 자료 유형	
	평가결과	
학점인정 신청 교과목명 II	확인사항 (산업체 인정 기준확인 등)	
	학과 교육과정과 산업체 경력의 관련성 평가내용	
	인정가능 자료 유형	
	평가결과	
학점인정소위원회		
위원명: _____ (서명),		위원명: _____ (서명)
위원명: _____ (서명),		위원명: _____ (서명)
위원명: _____ (서명),		위원명: _____ (서명)
간 사		심 사 일

* ① 학과별 학점인정소위원회의 평가인정 심사에 대한 평가결과보고서임(학과별 작성)
 ② 평가항목은 학과별 기준을 마련하여 평가인정 심사기준을 활용함
 ③ 평가는 학점인정 신청 교과목별로 산업체근무경력 직무와의 관련성을 평가함

[별지6] 산업체 근무경력 등의 학점인정 평가서

산업체 근무경력 등의 학점인정 평가서								
성 명				생년월일				
학 과 명			학 년	학년	학 번			
학점인정범 위	학점인정 신청사항(총괄)				학점인정소위원회 심사결과			
	졸업이수학 점	학점인정 신청범위	학점인정 신청사항			교양	전공	계
			교양	전공	계			
평가인정 신청과목	이수 구분	교과목명			학 점	학점인정		
						인정	불인정	
	소계							

◆ 교과목 평가인정 사항 신청 교과목에 대한 평가내용 및 결과

교과목	평가항목	평가 결과의 적정성
	확인사항 (산업체 인정 기준 등)	
	학과 교육과정과 산업체 경력의 관련성 평가내용	
	학점인정 판정	
	확인사항 (산업체 인정 기준 등)	
	학과 교육과정과 산업체 경력의 관련성 평가내용	
	학점인정 판정	
	확인사항 (산업체 인정 기준 등)	
	학과 교육과정과 산업체 경력의 관련성 평가내용	
	학점인정 판정	

학점인정위원회

위원명: _____ (서명), 위원명: _____ (서명)
 위원명: _____ (서명), 위원명: _____ (서명)
 위원명: _____ (서명), 위원명: _____ (서명)

[별지기] ○○○○학년도 ○학기 산업체 근무경력 등의 학점인정 심의 결과서

산업체 근무경력 등의 학점인정 심의 결과서

성 명		생년월일	
학 과 명		학 년	학 번

◆ 평가항목별 평가(적정성)

교과목	평가자료 유형(해당란 √)					평가 수준 (○,×)	평가 총평
	산업체 인정기준	모집단위 전공·직무 관련성	직무 기술서	제출자료	기타		

◆ 평가 기준 준수 및 학점인정 적정성 평가

순번	교과목명	기준준수여부		평가	
		충족	미충족	인정	불인정
계					

상기와 같이 학점인정소위원회의 평가인정 결과에 대하여 「학칙 제31조의11」 및 「산업체 근무경력 등의 학점인정에 관한 규정」의 평가인정 심사기준 등에 의하여 적절히 평가하였으며, 확정합니다.

20 년 월 일

학점인정위원회

위원명: _____ (서명), 위원명: _____ (서명)
 위원명: _____ (서명), 위원명: _____ (서명)
 위원명: _____ (서명), 위원명: _____ (서명)

수원과학대학교 총장 귀하

[별지8] ○○○○학년도 ○학기 산업체 근무경력 등의 학점인정 승인 결과

○○○○학년도 ○학기 산업체 근무경력 등의 학점인정 승인 결과

(근거 : 학칙 제31조의11 및 산업체 근무경력 등의 학점인정에 관한 규정)

◆ 학점인정 세부내역

학과명	성명	학년	학번	교과목명	인정학점		비고
					학점	성적	
합계							

0000과 학과장 귀하

[별지 9] 산업체 근무경력 등의 학점인정 승인서

산업체 근무경력 등의 학점인정 승인서								
성 명				생년월일				
학 과 명				학 년			학 번	
학점인정 확정	학점인정 신청사항(총괄)				학점인정위원회 심사결과 인정 학점			
	졸업 이수학점	학점인정 신청범위	학점인정 신청사항			교양	전공	계
			교양	전공	계			
평가인정 확정현황	이수 구분	교과목명			학점	학점인정		
						인정	불인정	
	소계							

◆ 불인정 교과목

순번	이수구분	교과목명	신청학점	불인정 사유
기타 권고사항				

귀하가 「학칙 제31조의11」 및 「산업체 근무경력 등의 학점인정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신청한 산업체 근무경력 등의 학점인정에 대한 심의 결과, 위와 같이 학점인정을 확정하였기에 통보하니 귀하의 졸업에 필요한 이수학점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교 학 처 장 (인)

[별지 9]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동의서

수원과학대학교에서는 산업체 근무경력 등의 학점인정과 관련하여 귀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제3자 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한 후 서명하여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수집·이용하는 대상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개인정보이용기간 및 보유기간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본인식별절차, 학점인정 심의	학점인정 신청 및 심의 종료시까지 활용, 3년

※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 거부에 따른 불이익: 위 제공사항은 산업체 근무경력 등의 학점인정 신청에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거부하실 경우 산업체 근무경력 등의 학점인정 신청이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선택동의]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기간 및 보유기간
사진,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본인 식별절차에 이용	학점인정 신청 및 심의 종료시까지 활용, 3년
자격요건 확인을 위한 사항(학력사항 등)	자격 확인	

※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 직무기술내용 확인을 위하여 산업체에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확인할 수 있으며 거부할 시 학점불인정 등의 불이익이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본인은 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3자 제공 동의서”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성 명 :

(서명)